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58
----------	------

발의연월일 : 2016. 9. 21.

발의자 : 김수민 · 백재현 · 김종회

최경환(국) · 김삼화 · 황주홍

조배숙 · 이동섭 · 신용현

권칠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청의 특허출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미생물의 기탁·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청이 필요시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소수의 기관이 선행기술 조사 등의 업무를 독점하여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일본의 경우에도 2004년까지 1개의 전문기관만 운영하였으나, 신속한 업무처리와 전문기관 간 품질경쟁 유도를 위하여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전문기관을 11개로 확대하였음.

이에 우리나라도 현행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함으로써 전문기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기관을 지정하여”를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지정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의 제목 중 “지정의”를 “등록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8조제1항에”를 “제58조제2항에”로, “지정을”을 각각 “등록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을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8조제3항에”를 “제58조제4항에”로, “지정기준에”를 “등록기준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을”을 “등록을”로 한다.

제217조제1항제1호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제226조의2 중 “제58조제1항에”를 “제58조제2항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등을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 -----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